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9월 28일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11월 0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및 농업·농촌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제2조)

나. 지원사업에 컴퓨터 및 전산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 추가(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농업인의 특성을 살리고자 지원대상으로 컴퓨터 및 전산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청년세대의 감소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조례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 관련 입법례로,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49세까지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6곳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창원시, 익산시, 옥천군, 장수군, 무주군)

-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